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 토 의 견 서

- 기획경제위원회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0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투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성과급 포함)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한 연봉
상한기준 내에서 보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 제58조의2,
동법 제63조의3과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권한을,
투자·출연기관장은 임원과의 성과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출연기관장의 보수 결정권을,
투자·출연기관장은 임원의 보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 제정(안)은 투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을 공시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동법 제63조의3,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 제1항, 동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과, 투자·출연기관장에게 부여된 자율경영권을 제한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하여 투자·출연기관의 규모가 크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의 연봉상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2배에 달함에도 기관장 보수는 오히려 적으며, 서울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비해 인력은 108.8%, 예산은 118.6%에 달함에도 기관장 보수는 6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관장 등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규모, 물가, 주거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안)을 적용하면 2018년 연봉 기준으로 14명의 기관장과 2명의 임원 연봉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 결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을 제한하는 본 조례안은
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① 현행 기관 대립형 체제에서 시장의 산하기관장 보수 결정권과

② 기관장에게 부여된 자율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③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및 국가 주요기관과의 비교표('1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백만원)

구 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국 가
의료원	기 관 명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부산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가민장 연봉	149	189	169	248
	인력(현원)	1,605	1,392	639	1,475
	세출예산	186,445	208,583	74,150	157,182
도시 개발	기 관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민장 연봉	140	145	127	225
	인력(현원)	1,413	502	280	9,418
	세출예산	4,990,841	2,528,589	2,194,309	38,249,800
보증· 융자	기 관 명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가민장 연봉	155	161	134	237
	인력(현원)	453	340	95	80
	세출예산	122,669	275,940	83,366	337,253
중소 기업 지원	기 관 명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가민장 연봉	151	157	152	233
	인력(현원)	425	547	155	115
	세출예산	169,575	177,949	47,816	22,556

※ 분홍색 음영이 들어간 기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의 임금상한(7배) 초과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연기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II. 임원의 인사

- 지방공사·공단¹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 규정에 따라 임명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장(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사장(이사장)과 상임이사 간 경영성과계약에도 준용하여야 함

〈 상법 〉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서울시 공사는 모두 이사회 의결로, 시설공단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출연기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민법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 모든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있음

(보수규정에 명시, 성과계약 등 방식은 상이)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